## 2. 심판절차 종료선언

심판절차 종료선언 각하결정, 기각(합헌)결정, 인용결정 이외에 특별한 결정유형으로 심판절차 3 고 선언이 있다.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점에서는 각하결정과 같지만 각하결정 과는 다른 성격의 결정인 심판절차종료선언은 청구인의 사망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등으로 심판절차의 종료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절차관계의 종 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는 결정이다.

(이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에 있는 자료입니다.)